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

(김희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22일

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소양, 이정인, 이태성, 노승재
김경영, 김제리, 고병국, 이은주
김종무, 전석기, 박순규, 김평남
문장길, 홍성룡, 김기대, 정진술
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- 나. 어린이놀이기구, 어린이놀이시설, 관리주체 등을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- 라. 안전 및 위생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마.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,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정함(안 제5조)
- 바.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행정지도를 정함(안 제6조)
- 사.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- 아.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,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놀이기구”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.
2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.
3. “관리주체”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2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
3.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·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
4.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
5.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

- 6.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구청장이 관리·감독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안전점검 등)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제5조(안전의무의 이행)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,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.
- 3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
- 4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
- 5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

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

- 제6조(점검결과 조치 등)**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 동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- 제7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)**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
1.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·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
 2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
 3. 설치검사·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
 4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·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관리·감독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- 제8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)**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표창 및 포상 등)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이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), 제7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), 제8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), 제9조(표창 및 포상 등)에서 비용 발생의 소지가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조항 중 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), 제7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), 제9조(표창 및 포상 등)는 다음과 같이 기 추진 중에 있으며,
 - 제3조(안전관리계획 수립)과 관련하여 이미 매년 ‘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’ 을 수립·추진하고 있고,
 - 또한 제7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)과 관련하여서는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계획을 통해 업무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
 - 제9조(표창 및 포상 등)의 경우도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등 각 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유공 표창을 진행하고 있음
- 다만, 제8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)는 비용이 발생할 사유가 있으나 안전지킴이 1인당 담당범위, 운영비용, 시·자치구 부담비율 등이 불명확하여 기술적으로 근사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여차민

예 산 분 석 관 한기백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phan@seoul.go.kr